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이 행정문서 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정부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문서 혁신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정부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행정협업 및 지식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문서 혁신 추진근거 마련

- 1) 행정문서 내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개방형 문서 형식’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3조)
- 2) 행정문서 혁신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개방형 문서형식 적용 및 메타데이터 작성 등 문서처리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 3) 국민이 행정문서 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 가능하며, 문서가 다양한 형식 및 방법으로 제공·발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제16조)

나. 용지의 규격·지질 관련 규정 정비

- 1)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 규격(216mm×297mm)의 백상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28조)

다.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근거 마련

- 1) 행정업무 혁신의 정의 및 추진사항 등 구체화(안 제41조 개정)
- 행정업무 혁신의 정의 및 행정기관 장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의무 등 신설
 - 행정업무 혁신 추진사항에 행정협업,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공간혁신, 지식행정 활성화 등 포함
 - 행정업무 혁신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종합계획 수립 근거 신설
- 2) 과제 점검·관리 및 지원, 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기존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해 규정된 사항을 행정업무 혁신 전반으로 확대(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4, 제46조의6 내지 제46조의8 개정)
-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관리 및 지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기관

간 협약체결, 혁신책임관 임명

-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업무 혁신문화 조성 및 국제협력, 행정업무 혁신 우수 기관 포상 등

3) 행정업무 혁신 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규정된 행정협업, 지식행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 개정, 제47조를 안 제43조의2로 이동, 제3절 및 제48조, 제64조 삭제)

- 기존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협업과제 발굴로 구분된 조항을 행정협업과제 발굴 및 등록으로 통합하고 중복 내용 등 간소화
- 기존 지식행정 관련 세부 추진사항을 제43조의2로 이동하고 제3절 지식행정의 활성화 및 제48조(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 등은 내용 중복으로 삭제
- 행정업무 혁신 규정 신설에 따라 기존 제64조(업무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 등)는 내용 중복으로 삭제

라. 행정협업, 지식행정, 정책연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안
(안 제54조, 안 제55조 개정)

1) 행정협업의 추진범위 명확화 및 지식행정 세부 추진사항 정비(안 제42조제2항, 안 제43조의2 개정)

- 행정협업과제의 범위에 민간기관 위탁사업 등 단순 계약관계를 제외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유

도

- 지식행정 추진사항에 업무과정에서의 행정지식 수집·생산, 보관·활용방안 및 연구모임 등에 관한 내용 추가
- 행정안전부의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관리 의무 및 각 기관의 행정정보 현행화 의무 등 신설

2) 정책연구 관리 강화(안 제54조제2항, 안 제55조제3항 개정)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의무 대상에 교육감을 명확히 포함하고 기관별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 통보를 기존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어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 형식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문서의 전자적 처리)”를 “(문서처리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문서는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작성되는 문서의 처리절차를 고려하여 국민이 해당 문서에 대해 다양한 장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메타데이터(전자문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문서요지, 키워드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을 “(문서 작성의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전자우편주소를”을 “전자우편주소 등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을”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행정기관,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민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서식에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하는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행정협업의 촉진”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행정협업의 촉진)”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이하 “행정업무 혁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협업을 촉진하기”를 “행정업무 혁신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협업의 촉진”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행정협업 과제 발굴·수행 등 행정협업의 촉진
 2.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등 업무절차 개선
 3.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4. 사무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민원공간 등 업무공간 혁신
 5. 제43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의 지식행정 활성화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항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의 제목 “(행정협업과제의 등록)”을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을 위해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

(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관 위탁사업 등 계약관계는 제외한다.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제42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을 “행정협업과제에”로, “등록하여야 한다”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41조제1항”을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를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행정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을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관리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협업과제의 수행”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협업과제의 수행에”를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업책임관”을 “혁신책임관”으로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5조 중 “행정협업과제의 효율적”을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으로, “행정협업과제의 목적”을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협업책임관)”을 “(혁신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을 “행정업무 혁신을”로, ““협업책임관””을 ““혁신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업책임관”을 “혁신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협업”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협업 촉진”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행정협업의 촉진”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업책임관”을 “혁신책임관”으로, “행정협업시스템”을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으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협업시스템”을 “행정업무 혁신시

시스템”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의 제목 “(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을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협업시스템을”을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을”로, “행정협업시스템 활용”을 “행정업무 혁신시스템 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협업시스템”을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으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 중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를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협업과제의 수행”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한다.

제46조의6의 제목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를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협업의 효율적 수행”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한다.

제46조의7의 제목 “(행정협업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을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협업에”를 “행정업무 혁신에”로, “행정협업문화”를 “행정업무 혁신문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협업”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한다.

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행정협업 활성화”를 각각 “행정업무 혁신”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협업”을 각각 “행정업무 혁신”으로 한다.

제46조의8의 제목 “(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을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협업 성과”를 “행정업무 혁신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협업”을 “행정업무 혁신”으로 한다.

제47조 앞에 “제3절 지식행정의 활성화”를 삭제한다.

제47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43조의2(중전의 제47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정지식의 수집·생산, 보관·활용 방안
2. 연구모임 등을 통한 업무수행 경험 활용 활성화
3.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업무에 활용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5.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6.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지식을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에 수집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행정정보는 그 정보를 생산하는 해당 기관에서 수시로 등록하여 최신 정보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항 중 “장은”을 “장과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u>“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어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 형식을 말한다.</u>
3. ~ 14. (생 략)	4. ~ 15. (현행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제5조(<u>문서의 전자적 처리</u>)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 · 검토 · 협조 · 결재 · 등록 · 시행 · 분류 · 편철 · 보관 · 보존 · 이관 · 접수 · 배부 · 공람 · 검색 · 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u>문서처리의 기본원칙</u>) ① ----- ----- ----- ----- ----- ----- ----- ----- ----- ----- -- <u>하여야 하며, 문서는 개방형</u>

<신 설>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작성되는 문서의 처리절차를 고려하여 국민이 해당 문서에 대해 다양한 장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 ⑦ (생 략)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① · ② (생 략) ③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전자우 편주소 등 공무원임을 확인할

할 수 있다.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을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① (생략)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행정기관,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민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① ~ ⑥ (생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과 지 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서식에 용지의 규격 등을 표 시하는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1절 행정협업의 촉진	제1절 행정업무 혁신
제41조(행정협업의 촉진) ① 행정 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 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① 행정기 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 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기 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 으로 혁신(이하 “행정업무 혁

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발굴·수행 등 행정협업의 촉진

2.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등 업무절차 개선

3.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4. 사무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민원공간 등 업무공간 혁신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치 등이 필요한 업무

<신 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행정협업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행정협업과제의 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발굴한 과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5. 제43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의 지식행정 활성화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항

③ ----- 행정업무 혁신을 -----
-----.

④ -----

--- 행정업무 혁신-----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을 위해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관 위탁사업 등 계약관계는 제외한다.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③ -----
-- 행정협업과제에 -----

----- 제4

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의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행정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①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그 진행 상황

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① -----
----- 제42조 제1항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⑥ -----
----- 제42조제3항-----.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관리 및 지원)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협업과제의 수행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협업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

하여야 한다.

② -----
--- 행정업무 혁신 -----

-----.

③ -----

----- 행정업무 혁신
을 위해 -----
---.

④ -----

----- 혁신책임관 -----

-----.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

-----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

결할 수 있다.

제46조(협업책임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협업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협업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 (생략)
3.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개선
4.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5. (생략)
6. 그 밖에 행정협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업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46조의2에

-----.

제46조(혁신책임관) ① -----

----- 행정업무 혁신을 -----

--- “혁신책임관”-----

-----.

② 혁신책임관-----

-----.

1. ----- 행정업무 혁신 -----

2. (현행과 같음)

3. ----- 행정업무 혁신-----

4. ----- 행정업무 혁신-----

5. (현행과 같음)

6. ----- 행정업무 혁신-----

③ -----

-- 혁신책임관-----

따른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의2(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이하 “행정협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협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협업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관련문서 등을 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업시스템의 구

---- 행정업무 혁신시스템-----
-----.

제46조의2(행정업무 혁신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행정업무 혁신시스템

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의3(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①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6조의3(행정업무 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① -----
-----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을 -----
-- 행정업무 혁신시스템 활용 -----
-----.

② -----
---- 행정업무 혁신시스템 ----
-----.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

-----.

② ----- 행정업무 혁신-----

-----.

제46조의6(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공간·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6조의7(행정협업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협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협업 우수사례의 발굴·포상 및 홍보
2.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보급
5.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① -----

행정업무 혁신-----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① -----
----- 행정업무 혁신에 -----
----- 행정업무 혁신문화-----

-----.

1. 행정업무 혁신 -----

2. 행정업무 혁신을 -----

3. 행정업무 혁신을 -----

4. 행정업무 혁신을 -----

5. 행정업무 혁신을 -----

<삭 제>

7.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의8(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3절 지식행정의 활성화

제47조(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행정업무 혁신-----

-----.

③ ----- 행정업무 혁신-----

-----.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① -----
----- 행정업무 혁신성과-----

-----.

② ----- 행정업무 혁신-----

-----.

<삭 제>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관의 지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지식행정의 목표 및 활용 전략

2. 지식행정 담당자의 지정

<신 설>

2의2.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

2의3. 지식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방안

3.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보상 방안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

-----.

1.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정지식의 수집·생산, 보관·활용 방안

2. 연구모임 등을 통한 업무수행 경험 활용 활성화

3.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업무에 활용

<삭 제>

<삭 제>

<삭 제>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5.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48조(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부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전략
2. 행정지식관리시스템과 정부 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행정 우수사례 발굴·포상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전문가가 질의에 답변하는 운영방식 등 전문지식

6.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지식을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에 수집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행정정보는 그 정보를 생산하는 해당 기관에서 수시로 등록하여 최신 정보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4조(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진

단)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의 행정업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장과 교육감
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업무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 수행체계 및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효율성 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업무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 등을 할 때에 제3항에 따른 행정효율성진단 결과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48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업무 재설계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에 따른 조직진단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효율

성진단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능력을
가진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
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연 락 처	(044) 205 - 2270